

대여분납제에 관한 시행세칙

제1조 (목적) 이 세칙은 학칙 제41조 2항에 규정한 대여분납제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.

제2조 (대여분납금액) 대여분납금액은 수업료의 50% 이내로 한다.<개정 2014. 9. 1>

제3조 (신청절차) 대여분납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(학사일정에 명시) 신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14. 9. 1><개정 2017. 8. 9>

- ① 삭제<2014. 9. 1>
- ② 삭제<2014. 9. 1>
- ③ 삭제<2014. 9. 1>

제4조 (신청자격) ① 해당학기 등록대상자에 한해 신청 할 수 있다.<개정 2017. 8. 9>

- ② 신청자격의 제한<개정 2017. 8. 9>
 1. 신(편)입생, 재입학생(입학한 첫 학기만 신청불가)
 2.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학생(농어촌학자금 대출자 포함)
 3. 정규학기 등록생이 아닌 학생(학점당 등록금을 계산하는 학생 포함)
 4. 직전 등록학기에 대여분납 미납금이 있는 학생

제5조 (대여분납기간) ① 대여분납금은 대여분납으로 등록한 해당학기의 종강일(학사일정의 학기말고사 마지막 날)까지 상환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8. 9>

- ② 삭제<2017. 8. 9>
- ③ ①항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 시 장학금으로 대여분납금을 자동 상환한다.<개정 2017. 8. 9>

제6조 (휴학) ① 대여분납으로 등록한 학생이 학기 중에 휴학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.<개정 2017. 8. 9>

- ② 복학시의 등록금 납부액은 학칙시행세칙<제2장 수강신청 및 등록>에 따른다.
- ③ 삭제<2017. 8. 9>

제7조(대여분납금 미상환시의 조치) ① 삭제<2017. 8. 9>

- ② 대여분납금을 미납한 학생은 미납금과 해당 학기의 수업료를 완납해야 등록할 수 있다.<개정 2017. 8. 9>
- ③ 졸업예정자 중 졸업심사 전까지 대여분납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다.<개정 2017. 8. 9>

부 칙

- ① 이 제정세칙은 199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세칙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의결로 총장이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이 개정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이 개정세칙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.